

사 업 연 도	2025-01-01 ~ 2025-12-31	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	법인명	(주)에이치비이엠
			사업자등록번호	140-81-62109

구 분	① 요 건	② 검 토 내 용	③적합 여부	④적정 여부															
중 요 건	(101) 사업요건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③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※ ①·③은 2025. 2. 28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준경비 율코드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 수입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1) 제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8910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66,531,544,743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2) 그 밖의 사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5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8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3) 그 밖의 사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6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9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계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66,531,544,74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준경비 율코드	사업 수입금액	(01) 제조업	289101	66,531,544,743	(02) 그 밖의 사업	(05)	(08)	(03) 그 밖의 사업	(06)	(09)	계		66,531,544,743	(17) 적합(Y) 부적합(N)	(26)
	구분	기준경비 율코드	사업 수입금액																
	(01) 제조업	289101	66,531,544,743																
	(02) 그 밖의 사업	(05)	(08)																
(03) 그 밖의 사업	(06)	(09)																	
계		66,531,544,743																	
기 건	(102) 규모요건 ○ 아래 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(“평균매출액등”은 “매출액”으로 봄) 이내일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	가. 매출액 - 당 회사(10) (665.3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11) (1,200 억원)이하 나. 자산총액(12) (1,732.8 억원)	(18) 적합(Y) 부적합(N)	적합(Y)															
	(103) 독립성요건 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	·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,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·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·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(102)의① 기준) 이내일 것	(19) 적합(Y) 부적합(N)	부적합(N)															
업 유 예 기 간	(104) 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	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(102)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[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 사업연도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사업연도)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○ 사유발생 연도(13) ()년	(20) 적합(Y) 부적합(N)																
소 요 건	(105)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중소기업 업종(101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요건(103)을 충족하는지 여부	(21) 적합(Y) 부적합(N)	(27)															
	(106)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“평균매출액등”은 “매출액”으로 봄)이하 이내일 것	○ 매출액 - 당 회사(14) (665.3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15) (120 억원) 이하	(22) 적합(Y) 부적합(N)	적합(Y) 부적합(N)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
삼일회계법인
 대표이사 윤 훈



구분	① 요 건	② 검 토 내 용				③적합 여부	④적정 여부
중견기업	(107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, 중소기업 업종[(101)]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			(23) 적합(Y) 부적합(N)	(28)
	(108)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·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합니다) 				(24) 적합(Y) 부적합(N)	적합(Y)
	(109)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(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): 1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으로 한정합니다) 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):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: 3천억원 미만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				(25) 적합(Y) 부적합(N)	부적합(N)
		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	
		(354.9)억원	(414.6)억원	(451.4)억원	(407.0)억원		
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

삼일회계법인

대표이사 윤 훈

